

## 4 재정운용계획

### 4-1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57	20,039
여성정책추진사업	18	2,258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1	15,051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8	2,730

- 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[별지1] 참고

#### 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#### 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#### 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## 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덕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 시기	모델
367,084	8월 ~ 9월 경	1

▶ 2016년 당초예산 기준

### 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### 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<b>계</b>	<b>16</b>	<b>72</b>	<b>191</b>	<b>142</b>	<b>337,874</b>	<b>307,575</b>	<b>30,299</b>
의회사무과	1	1	2	2	813	1,380	-568
기획감사실	1	3	8	6	7,588	8,150	-562
주민복지과	1	9	26	17	60,079	58,669	1,410
자치행정과	1	4	13	8	17,694	16,718	976
종합민원처리과	1	2	6	6	2,277	1,442	835
재무과	1	3	6	6	30,975	23,980	6,994
문화관광과	1	3	6	6	28,440	18,136	10,305
새마을경제과	1	10	26	15	55,083	42,553	12,530
환경위생과	1	5	9	7	7,468	6,745	724
해양수산과	1	4	12	8	22,660	18,958	3,702
산림자원과	1	4	8	7	8,967	6,783	2,184
안전재난건설과	1	6	21	12	28,917	36,041	-7,124
보건소	1	2	6	6	5,060	8,308	-3,248
농업기술센터	1	6	21	20	30,674	34,160	-3,486
상.하수도사업소	1	2	5	6	20,262	18,830	1,432
시설관리사업소	1	8	16	10	10,917	6,722	4,195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#### 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3.51	60.79	21.88	24.16	57.08	125.12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#### 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3	53	
	부단체장	36	36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15	197	-18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41	41	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42	42	
	의원국외여비	18	18	
지방보조금		15,744	7,842	△7,902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713	713	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	1,131	
공무원 일·숙직비		310	310	
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.go.kr>)

#### 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(세출 효율화)과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기준재정수요 반영액 (세출 효율화)	기준재정수입 반영액 (세입 확충)
2,446	△5,598

- ▶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(2015. 12. 29. 교부),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
- ▶ (+) 인센티브, (-) 페널티

#### ❖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요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690	2,446
인건비 절감	0	10
지방의회경비 절감	6	4
업무추진비 절감	11	9
행사·축제성경비 절감	0	△318
지방보조금(민간이전경비) 절감	△193	2,156
지방청사 관리·운영	866	585
읍면동 통합운영	0	0
민간위탁금 절감	0	0

❖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반영항목	기준재정수입 반영액	
	2015년	2016년
계	2,063	△5,598
지방세 징수율 제고	1,479	△1,939
지방세 체납액 축소	475	△3,681
경상세외수입 확충	833	480
세외수입 체납액 축소	△420	△201
탄력세율 적용	△302	△254
지방세 감면액 축소	△2	△3

## 4-7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☐ 2015년에 우리 영덕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합 계		206
법령위반 과다지출	지방도로 및 산단도로 포장공사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	190
법령위반 과다지출	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적정	3
법령위반 과다지출	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	11
수입징수 태만	수산자원조성금 부과·징수 부적정	1
수입징수 태만	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	1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융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